

##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특약

#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'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'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', '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'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#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
- ② 「기초연금법」에서 정하는 기초(노령)연금 수급자
- 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
- ④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⑤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
- ⑥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
- ⑦ 「긴급지원복지법」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
- ⑧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

### 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.

### 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### 제6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0원이며 잔액은 제한이 없다.

### 제7조 【거래제한】

-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 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 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,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다.
- ②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

경우, 결제·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(입금은 수급금에 한함)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결제·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연 0.5%p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.
-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

### 제9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(결산일)은 매년 3, 6, 9월 셋째 토요일이며 12월은 말일로 한다.
- ② 이자 계산기간(결산기간)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)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.

### 제10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(지급일)에 통장으로 입금된다.

### 제11조 【우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.
  1.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: 인터넷·폰·모바일(IC칩/VM/스마트폰)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(단,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제외)
  2.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: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현금 인출, 우체국간 계좌이체·CMS·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
  3. 자기앞수표 발행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
-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게시한다.

### 제12조 【과세구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.

**제13조 【기타】**

-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, 전자통장 약정, 상계, 양도, 담보제공이 불가하다.
- ② 이 예금은 인터넷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.

**부 칙**

- ① 이 특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